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박승직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
----------	-----

발의년월일 : 2019. 4. .

발 의 자 : 박승직·남용대·윤창욱·
김수문·김진욱·김상현·
김시환·오세혁·박정현
정세현(10명)

찬 성 자 : 5명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해당 조항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신설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정비(상위법 제23조)
- 상위법령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에 따른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등 주요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운영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 건축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6.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붙임
- 규제심사 : 붙임
- 비용추계서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붙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붙임

7. 참고사항

- 발의·찬성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총괄건축가 운영)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2.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과 임대주택건설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및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5.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이전,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도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북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도지사는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2조(총괄건축가 운영)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2.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과 임대주택건설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건축디자인 기준 및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자문 5.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현행	개정안
	<u>이전,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u> <u>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u> <u>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u>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도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3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북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u>

현행	개정안
	<u>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u> ② <u>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③ <u>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u> 2. <u>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u> 3. <u>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u> ④ <u>도지사는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4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법령 발췌 〉

□ 건축기본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4.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일부개정]

-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조례명: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건축디자인과		<조례 개정에 신중 필요> 「건축기본법」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건축기본법」 제18조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축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인바,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대법원 2006추45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와 공공공건축가로 나누고 있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중첩되는 등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나라, 총괄건축가를 비상근직으로 하도록 하면서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도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도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임. 아울러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총괄건축가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도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 법률유보 원칙 위반 소지, 각각의 제도 구분의 모호성 등의 문제로 그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구 열
입 안 주 무 부 서	의원발의	통 보 (조 치) 일	2019. 4.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X	① 구체적 · 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 · 주관적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해당부서)

□ 조례명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illegible]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공공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등에 대한 총괄 자문·조정을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조례 신설)
- 그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적용 : 364,046원(8시간/일) * 71회 (2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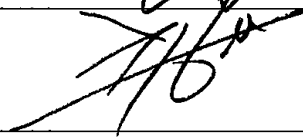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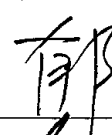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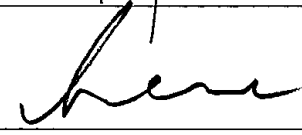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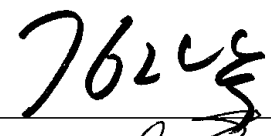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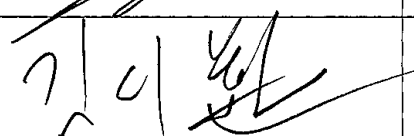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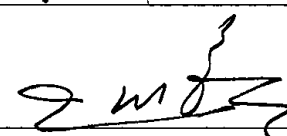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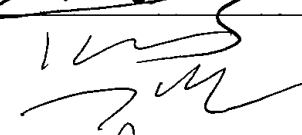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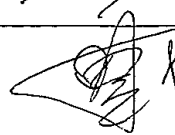
⇒ 연간 운영수당 26,000천원 소요 예상

4.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지방시설주사 이경미 (054-880-4016)

발의의원 서명명부

(제명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백 등직		
박영태		
문창우		
김우문		
김진욱		
김상현		
김이환		
홍시경		
백정환		
김시현		

찬 성 의 원 서 명 명 부

(제명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백 사 영	백 사 영	
김 병 호	김 병 호	
고 우 현	고 우 현	
이 재 도	이 재 도	
최 병 권	최 병 권	